

개정 식품위생법령 해설

양 주 흥 / 한국식품공업협회 업무부 차장

2000. 1. 12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각종 행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위해식품단속등에 대한 주무장관의 재량을 축소하여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이 개정되고, 2000. 7. 27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922호)이 개정되어 조건부 영업허가 및 식품위생관리인의 의무고용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00. 8. 8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66호)이 개정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식품위생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간단히 서술토록 하겠다.

I. 주요골자

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그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토록 함(법 제10조 후단 신설)

나.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제품검사제도의 폐지(법 제13조 내지 제15조, 영 제3조 및 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10조 삭제)

다. 수입식품검사제도의 합리적 조정(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 (1) 수입식품등의 신고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관절차 완료전에 관계공무원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 (2) 검사결과 확인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는 식품류의 확대

라.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의 범위를 식품에서 식품 및 식품첨가물로 확대(영 제7조제5항)

마.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을 위탁·생산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를 위탁자가 하도록 함(시행규칙 제25조)

바.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할 경우 신고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폐업시에만 보고토록 함(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사. 조건부영업허가제도 폐지(법 제23조, 영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30조·제31조)

아. 위생교육의 합리적 조정(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6조 내지 제37조의 2)

- (1) 위생교육은 신규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위주로 실시하되 위생교육대상자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그 종업원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

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이 식품으로 인하여 유행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업종의 영업자 및 종업원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음

자. 식품위생관리인의 의무고용제도 폐지(법 제28조, 영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제39조)

차.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등을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31조)

카.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의 범위를 제조업을 포함하여 상시 1회 50인이 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하고,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를 중소기업자등(병원 제외)과 집단급식소의 조리사가 영양사면허를 받은 경우로 하며,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 범위 삭제(영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45조)

다. 동업자조합 관련규정 조정(법 제44조 내지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51조)

- (1) 동업자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20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인가를 받아야 함
- (2) 정관의 내용 및 조합임원의 해임 또는 개선명령 규정 삭제
- (3)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규정 삭제

파. 시·도에만 설치되어 있던 식품진흥기금을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고 그 귀속비율도 시·도 : 시·군·구 = 40 : 60으로 함(법 제71조 및 영 제39조의2, 제42조, 제43조)

하. 허위표시및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는표시및광고의범위와적용대상식품의 범위 확대(별표 3)

거.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시설이 부족할 경우 타 제조·가공업소에 위탁하여 식

품제조·가공할 수 있음(별표 9)

너. 식품공전의 개정에 따라 특수영양식품의 광고사전심의대상을 영양보충용식품과 식사대용식품중 체중조절용식품으로 조정(별표 12, 별표 13)

II.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중 개정법률 주요내용 <법률 제6,154호 2000.1.12>

1.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제10조) : 의원입법

-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생물의 유전자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0-43호(2000.8.30)로 고시되어 2001년 7월 13일부터 시행

2. 정부책임하에 실시하고 있는 인삼제품류, 건강보조식품 등에 대한 사전제품 검사제도를 폐지함(제13조 내지 제15조 삭제)

3.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관절차 완료전에 관계공무원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 함(제16조)

4. 영업의 허가(신고)사항 변경시 허가(신고)사항(제22조)

- 허가사항 :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폐업

- 신고사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

5. 조건부영업허가 폐지(제23조)

6. 영업허가등의 제한(제24조)

- 영업허가의 제한(제24조제1항)
 - 당해 영업의 시설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제외)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외
 -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 (☆청소년을 유혹적객원으로 고용, 유희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제외)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중전 2년 → 1년)
 -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
 - 공익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영업 또는 품목에 해당하는 때

-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
 - ※ 동항 제6호(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미종료되었거나 집행이 미확정된 자) : 삭제

○ 영업신고의 제한(제24조제2항)

-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
-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중전 2년 → 1년)
-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

7. 위생교육(제27조)

- 기존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위생교육(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게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음

- 신규 영업자에 대한 교육(제2항)
 -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대리 위생교육 인정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 2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그 종업원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음
- 위생교육 면제
 -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8. 식품위생관리인 제도를 폐지함(제28조 삭제)

- 식품위생관리인의 의무고용제의 폐지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위생관리인의 의무고용제가 이미 폐지되었으나, 그 관리인의 업무, 자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현재까지 운영하였음
 - 동 규정의 삭제로 인하여 동 위생관리인의 의무고용제가 폐지됨
 - 향후 식품위생관리인의 직무에 관한 사항등 식품제조·가공과 관련된 식품위생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영업자의 책임임

9.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영업자준수사항 신설(제31조제2항)

-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식품접객업중 청소년보호법의 규정

- 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10.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제32조)

- 우수업소(식품등 제조·가공업소) 및 모범업소(식품접객업) 지정
-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우선 지원
 - 허가(신고)관청이 일정기간동안 출입·검사를 면제
 -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
 -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11. 시설이용의 거부금지 삭제(제33조)

- 식품접객영업자가 전염성질환에 걸렸다고 인정되는 자, 도박 또는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자 이외의 자에 대한 영업시설의 이용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12. 영양사의 면허·교육 등 규정 개정

- 영양사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제37조)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 부전공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영양사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임
- 영양사 자격시험 기관 지정(신설)
 -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격시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결격자 조정(제38조)
 -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지체자→정신

- 지체자 삭제
- 보수교육 → 교육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자구수정(제40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41조)
 -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13. 조합설립과 관련규정

- 조합설립 발기인수 조정(제44조)
 -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2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인가 →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20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인가
- 정관, 조합임원의 개선명령 등 삭제(제46조, 제47조)
 - 정관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삭제
 - 조합임원의 개선명령등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

14.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위생시설의 개수명령 관련규정 삭제(제57조 제3항)

15. 사체해부규정 삭제(제68조)

- 식품등으로 인한 질병 또는 그에 기인하였다고 의심되는 질병으로 사망한 자의 사체를 그 유족의 동의를 얻어 해부할 수 있음(☆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함)

16. 식품진흥기금 관련규정 개정(제71조)

- 과징금의 귀속에 대한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가에 귀속
 - 시·도지사 → 시·도의 식품진흥기금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 및 시·군·구청의 식품진흥기금(신설)

- ※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의 귀속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금의 설치 : 종전에 시·도 → 시·도 및 시·군·구
 - 기금사업 추가 :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
 - 기금관리운용 : 종전에 시·도지사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17. 기타 개정사항

- 협회의 사업 조정(제53조)
 - 식품위생관리인의 교육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 제54조(준용)
 - 제46조·제47조 및 제51조제1항 → 제51조제1항
- 제58조(허가의 취소등)
 - 제15조 → 제15조, 제16조제1항(수입식품신고)
 -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식품위생관리인 관련규정), 제29조 → 제27조제5항, 제29조
 - 제24조제1항제1호·제5호 또는 제6호의 1 → 제24조제1항제1호·제5호
- 제60조(영업허가등의 취소요청)
 - 축산물위생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 제66조(국고보조)제8호 삭제
 -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체의 해부에 소요되는 경비
- 제76조(벌칙)
 - 제28조제1항 및 제3항(식품위생관리인 관련규정), 제34조 → 제34조
- 제77조(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동조제4호 삭제(식품위생관리인 관련규정)
 - 제31조 → 제31조제1항
- 제78조(과태료)
 - 제27조제1항 및 제3항 → 제27조제1항 및 제5항
 - 제28조제4항(식품위생관리인 관련규정) 또는 제29조제2항 → 제29조제2항

- 제57조제1항 또는 제3항(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개수명령) → 제57조제1항

**식품위생법시행령중 개정령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16,922호 2000.7.27>**

1. 제품검사제도 폐지에 따라 대상식품 삭제(제3조 삭제)

2. 수출식품등의 검사제도 폐지(제4조 삭제)

-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식품등을 수출하고자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삭제

3.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조정(제6조)

- 식품위생관리인, 조리사, 영양사의 법령 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지도 중 식품위생관리인 삭제

4. 유통전문판매업의 범위 조정(제7조제5호)

- 유통전문판매업의 범위를 식품에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확대

5.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신설(제13조의2)

-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 변경에 따라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을 시행령으로 바꿈

6. 조건부 영업허가의 대상 폐지(제14조 삭제)

- 영 제7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동조 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7. 식품위생관리인 관련규정 폐지

- 식품위생관리인의 의무고용제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 삭제
-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식품등 삭제(제15조)

- 1종, 2종 또는 식품위생관리인 같음자
- 식품위생관리인의 구분과 자격 삭제(제16조)
 - 1종 식품위생관리인과 2종 식품위생관리인
- 식품위생관리인의 직무 삭제(제17조)
 - 자가품질검사, 기구·용기와 포장의 기준 및 규격검사, 표시기준 및 광고의 적합여부확인, 생산 및 품질관리일지의 작성·비치 등

8. 영업자 준수사항 적용대상 업소의 범위 확대(제17조2)

- 법 제31조 → 법 제31조제1항
- 영 제7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적용대상범위에 포함

9.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의 범위 조정(제19조)

-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의 범위를 상시 1회 50인이상으로 변경
 - 종전에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100인 이상
-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을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외에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등(병원을 제외)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포함

10. 동업자조합의 설립 관련규정 변경

- 조합의 설립인가신청서류중 조합원의 동의서 삭제(제28조)
- 동일지역내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에 대한 복수조합 허용(제29조)
 - 조합지역내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은 2이상 설립할 수 없다는 조항 폐지

11.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개수명령 규정 폐지(제35조 삭제)

12.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을 정함(제39조의2 신설)

- 시·도 : 100분의 40
- 시·군·구 : 100분의 60

13. 기타사항

- 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등(제18조)
 - 기업활동규제완화에대한특별조치법 제36조 → 기업활동규제완화에대한특별조치법 제28조제2항
- 허가의 취소등(제36조)
 - 청문을 행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문절차 → 청문 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절차
- 식품진흥기금사업(제42조)
 - 법 제71조제3항제6호 → 법 제71조제3항제7호
 - 시·도지사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기금의 운용(제43조)
 - 시·도지사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개정령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령 제166호 2000.8.8>

1. 제품검사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 삭제(제7조 내지 제10조)

- 제품검사신청 및 검사수수료, 검체의 채취 등, 제품검사의 방법등 및 제품검사합격증지의 교부 등 삭제

2. 식품등의 수입신고 관련규정 변경(제11조)

-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를 의무적으로 행하여야 하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 신설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과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한 식품등인지 검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위생상의 위해에 관한 보고자료등을 검토한 결과 국민보건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검사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교부 → 검사후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수입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교부
- 검사결과 확인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는 식품
 - 어·패류 → 수산물
 - 과실류, 채소류, 감자류 등 서류, 버섯류, 향신식물 또는 야생식물 → 농·임산물
-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15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3.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면제규정 삭제(제19조)

- 제품검사제도의 폐지에 따른 단서규정 삭제

4.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위탁·제조 가공하는 경우 위탁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도록 함(제25조 후단 신설)

5. 신고사항의 변경 삭제(제28조 삭제)

-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 변경에 따라 시행령으로 자리 바뀜

6. 휴업·재개업시 신고토록 하는 규정을 폐업시에만 신고토록 함(제29조)

7. 조건부 영업허가 관련규정 폐지(제36조, 제31조)

8. 기존 위생교육대상자 조정(제36조)

- 전염병예방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이 식품으로 인하여 유행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등으로 국민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업종의 영업자 및 그

종업원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처분을 받은 영업자 포함)

9. 신규 위생교육대상자의 교육시간 조정 (제37조의2)

- 영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 : 12시간
- 영 제7조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 : 4시간
- 영 제7조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 : 6시간
-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교육받은 업종과 동일업종 또는 휴게음식점 영업과 일반음식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외의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때에 신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

10. 업종별로 두어야 할 식품위생관리인의 수 및 식품위생관리인 선임·해임 규정 폐지(제38조, 제39조 삭제)

11. 영양사를 공동으로 들 수 있는 집단급식소 범위 규정 폐지(제45조 삭제)

12.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교육으로 명칭 변경(제49조, 제50조)

13. 조합의 정관사항 변경시 신고토록 한 규정 폐지(제51조 삭제)

-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한 규정 폐지

14. 별표등 개정사항

- 별표 1(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별표 3(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

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와 그 적용대상식품)

제2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함

- (3) 제품에 함유된 주요성분의 신체조직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인 기능 및 작용의 표현(예시 : 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지방산 등의 기능 및 작용)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라. 기타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

- 별표 6(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

제2호가목에 (12) 및 (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다목(4)를 삭제하며, 동목(8)중 “제11조제4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함

- (12)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원료
- (13) 정제가공을 거쳐야만 하는 식품의 원료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 제3호가목(1) 단서를 삭제

- 별표 7(식품등의 수거대상 및 수거량)

- 제3호가목 식품의 종류란의 자연산 물란중 “곡류 및 두류”를 “곡류·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로 함

- 별표 8(자가품질검사기준)

- 제1호다목(2)중 “인삼제품류 및 건강보조식품”을 “인삼제품류”로 함

- 별표 9(업종별시설기준)

- 제1호나목(3)(나)를 삭제하고, 동호사목(1)(나)중 “도시락”을 “도시락류·떡류 및 메주”로 하며, 동호자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5)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함

(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

- 제8호가목(1)(가)중 “식품접객업”을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으로 하고, 동목(4)

를 삭제하며, 동목(6)(나)중 “영 제 7조제5호나목(9)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가 휴게음식점 영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함

○ 별표 12(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

－ 제11호중 “특수영양식품(식이섬유가공식품 및 특정용도식품중 저열량식품에 한한다)”을 “특수영양식품(영양보충용식품과 식사대용식품중 체중조절용식품에 한한다)”으로 함

○ 별표 13(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

－ 제1호마목 내지 아목을 각각 바목 내지 자목으로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마.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호자목중 “수입신고필증·수입승인서·선적서·내용명세서(송장) 및 수입신고필증의 사본과 판매”를 “선적서·내용명세서(송장) 및 판매”로 하고, 동호너목중 “특수영양식품(식이섬유가공식품 및 특정용도식품중 저열량식품에 한한다)”을 “특수영양식품(영양보충용식품과 식사대용식품중 체중조절용식품에 한한다)”으로 함

－ 제3호사목중 “제27조제2항 단서”를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 제5호사목중 “허가받은”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으로 하고, 동호차목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식품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함

－ 제5호타목(2)중 “음향시설”을 “음향 및 반주시설”로 하고, 동목 (6)내지 (9)를 각각 삭제하며, 동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한 식품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별표 15(행정처분기준)

－ I. 일반기준 제7호 단서중 “법 제

11조, 제15조”를 “법 제11조”로 하고, 동표 I. 일반기준 제11호바목을 사목으로 하며,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

－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위반사항란 제3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하고, 동란 제8호마목(2)중 “표시하거나 식품공전에서 정한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표시한 때”를 “표시한 때”로 함

－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9호란을 삭제

－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12호사목의 1차위반란중 “품목제조정지 15일”을 “시정명령”으로 함

－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위반사항란 제15호중 “법 제27조(위생교육)제3항”을 “법 제27조(위생교육)제5항”으로 하고, 동란 제17호중 “법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를 “법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제1항”으로 하며, 동호나목(2)란 내지 (4)란을 각각 (3)란 내지 (5)란으로 하고, 동목에 (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2) 별표 13 제1호마목 위반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	---------	---------	---------

－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위반사항란 제17호나목(3)[중전의 (2)]중 “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동목(4)[중전의 (3)]중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동목 (5)[중전의 (4)]중 “(3)”을 “(4)”로 하고, 동란 제18호중 “보수교육”을 “교육”으로 함

－ II.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등 위반사항란 제3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함

－ II.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등 제9호란을 삭제

－ II.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등 위반사항란 제12호중 “법 제27조(위생교육)제3항”을 “법 제27조(위생교육)

- 제5항”으로 하고, 동란 제13호중 “법 제31조(영업자의 준수사항)”를 “법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제1항”으로 함
-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위반사항란 제3호 및 제5호마목·아목중 “축산물위생처리법”을 각각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하고, 동란 제9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함
 - 바.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위반사항란 제12호중 “법 제27조(위생교육)제3항”을 “법 제27조(위생교육)제5항”으로 하고, 동란 제14호중 “법 제31조(영업자의 준수사항)”를 “법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제1항”으로 함
 -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4호가목란을 삭제하고, 동호나목 위반사항란중 “제5호타목(1) 또는 타목(7)”을 “제5호타목(1)”로 하며, 동호다목중 “타목(5)·타목(9)”를 “타목(5)”로 하고, 동호라목중 “제5호타목(2)·타목(8) 또는 더목”을 “제5호타목(2)·더목 또는 처목”으로 함
 -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란 내지 제18호란을 각각 제16호란 내지 제19호란으로 하고, 제1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 | | | | |
|-----------------------|------------|------------|----------------------------|
| 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하는 행위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위반사항란 제17호(중전의 제16호)중 “보수교육”을 “교육”으로 함
 - II. 개별기준 4. 조리사 또는 영양사 위반사항란 제4호중 “보수교육”을 “교육”으로 함
 - III. 과징금제외대상 제1호라목을 삭제
 - III. 과징금제외대상 제3호다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함
 - 다. 제9호바목에 해당하는 때
 - 바. 제14호나목중 별표 13 제5호타목(1)에 해당하는 때
 - III. 과징금제외대상 제3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 사. 제15호나목·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때
 - 별표 16(과징금제외대상) 제1호중
 - “※ 조건부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규영업허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를 삭제하고, 동표 제3호다목(1)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
 - (라) 식품등 수입신고를 제11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교환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15. 법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제2항 위반사항	법 제58조						
가. 청소년을 유혹接客원으로 고용하여 유혹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영업정지 3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15. 별지서식

-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삭제
- 별지 제4호서식 1쪽의 ㉔란을 다음과 같이 함

㉔수입신고필증교부여부	예(), 아니오()
-------------	--------------

- 별지 제14호의3서식 제4호중 “식품위생관리인 선임(변경)사항”을 “위생관리책임자(식품위생교육관련) 지정사항”으로 하고, 동호의 신고내용란을 삭제